

의 안 발 의 서

의 번	안 호	2011 -
--------	--------	--------

수 신 : 거창군의회 의장

2011. 3. .

제 목 : 조례안 제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거창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거창군의회 안 철 우 의원 (인)

거창군의회 이 애 숙 의원 (인)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1. 03. . (제 173 회)

의결사항

거창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발의자	안철우의원외1
발의연월일	2011. 03. .

거창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1- 호
----------	----------

발의연월일 2011년 3월 일

발 의 자 안철우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관내의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 부담금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라. 부담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마. 부담금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노인복지법」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5조, 제40조

나. 예산조치 : 시행시 소요예산 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 합의

라. 기타 : 해당없음

거창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담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시설 또는 재가급여서비스를 받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군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한도액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지원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부담금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부담금 지급 시기는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사망한 그 다음날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③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예산이 확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담금 지원범위

구 분	요양등급	지원범위	비 고
시 설	감경1등급	부담금의 30%이내	
	감경2등급	부담금의 30%이내	
	감경3등급	부담금의 30%이내	
	일반1등급	부담금의 15%이내	
	일반2등급	부담금의 15%이내	
	일반3등급	부담금의 15%이내	
재 가	감경1등급	부담금의 60%이내	
	감경2등급	부담금의 60%이내	
	감경3등급	부담금의 60%이내	
	일반1등급	부담금의 30%이내	
	일반2등급	부담금의 30%이내	
	일반3등급	부담금의 30%이내	

[별지 제1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장기요양등급 판 정 결 과	등급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좌번호		금 용 기 관 명		예금주명		
소득조사 결 과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계	원	지 역 보 험 료	원	직 장 보 험 료	원
	가구원수	명	대 상 자 적 합 여 부		1. 적 합 2. 부적합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p>「거창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인)</p> <p>거창군수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210mm ×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선정결과 통지서

지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득조사 결과	적합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지원결정일	20 년 월분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원			
	부적합사유				

「거창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귀하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창군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연 번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장기요양 등 급	가구 원수	건강보험료 합 계	결 정 통 지 일	지 급 지 일	비 고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등급	명	원			

210mm ×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관 계 법 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09.5.21, 2010.3.17>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